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6조(정책홍보관리관) ① (생략)</p> <p>②정책홍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기획</u></p> <p>3. ~ 15. (생략)</p>  | <p>제6조(정책홍보관리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br/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3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  |
| <p>제8조의2(국제조세관리관) ① (생략)</p> <p>②국제조세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.</p> <p>1. 외국인·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의 부과·감면업무의 기획 및 <u>조사계획의 수립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5. <u>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·처리</u></p> <p>6. <u>국제거래에 대한 심리·조사</u></p> <p>7. <u>외환전산자료의 수집·분석 및 활용</u></p> | <p>제8조의2(국제조세관리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br/>-----.</p> <p>1.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u>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</u></p> <p>6. <u>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탈세정보의 수집·처리</u></p> <p>&lt;삭제&gt;</p> |

|  |  |
|--|--|
| 8. <u>정부간 조세정보의 교환</u>   | <삭 제>  |
| 9. (생 략)   | 9. (현행과 같음)  |
| 제11조(법무심사국) ① (생 략)  | 제11조(법무심사국) ① (현행과 같음)   |
|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 | ②-----.  |
| 1. ~ 5. (생 략)  | 1. ~ 5. (현행과 같음)   |
| <신 설>  | <u>5의2. 과세기준의 자문에 관한 사항</u>  |
| 6. ~ 10. (생 략)   | 6. ~ 10. (현행과 같음)  |
| 제12조(개인납세국) ① (생 략)  | 제12조(개인납세국) ① (현행과 같음)   |
|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 | ②-----.  |
| 1. 부가가치세·소득세·상속세·증여세·종합부동산세 및 개인에 대한 부당이득세의 신고·경정·환급·감면업무의 <u>기획</u> | 1.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기획 및</u><br><u>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</u> |
| 2. ~ 18. (생 략)   | 2. ~ 18. (현행과 같음)  |
| 제13조(법인납세국) ① (생 략)  | 제13조(법인납세국) ① (현행과 같음)   |
|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 | ②-----.  |
| 1. 법인세 및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세의 부과·감면업무의 <u>기획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-----<br>----- <u>기획 및</u><br><u>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</u>                   |
| 2. ~ 8. (생 략)  | 2. ~ 8. (현행과 같음)   |
| 제14조(조사국) ① (생 략)  | 제14조(조사국) ① (현행과 같음)   |
|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 | ②-----.  |
| 1. ~ 16. (생 략)   | 1. ~ 16. (현행과 같음)  |
| <신 설>  | <u>17. 외환전산자료의 수집·분석</u>   |
| <신 설>  | <u>및 활용</u>  |
| <신 설>  | <u>18. 정부간 조세정보의 교환</u>  |

제26조(하부조직) ①지방국세청에  
납세지원국·세원관리국·조사1국  
및 조사2국을 둔다. 다만, 서울지  
방국세청(이하 “서울청”이라 한  
다)에는 납세지원국·세원관리국·  
조사1국·조사2국·조사3국·조사4  
국 및 국제거래관리국을, 중부지  
방국세청(이하 “중부청”이라 한  
다) 및 부산지방국세청(이하 “부  
산청”이라 한다)에는 납세지원  
국·세원관리국·조사1국·조사2국  
및 조사3국을 둔다.

② (생략)

제27조(납세지원국) ① (생략)

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2. (생략)

3. 납세관련 제도·정책에 대한 국  
민의견 수렴

4. 친절서비스 운동

5. (생략)

6.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  
처리

7. ~ 10. (생략)

제28조(세원관리국) ① (생략)

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다만,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은 제1  
호 내지 제9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제26조(하부조직) ①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국제거래조사국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납세지원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1.2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5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7. ~ 10.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세원관리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<단서 삭제>

1. 내국세의 신고·경정·부과 및  
감면업무

2. ~ 11. (생략)

제32조(조사2국) ① (생략)

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 
다만, 서울청 조사2국장은 제31  
조제2항제1호·제2호·제5호 및 제  
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~ 9. (생략)

제33조(조사3국) ① (생략)

②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 내지  
제11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다만,  
서울청 조사3국장은 제32조제2항  
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제33조의3(국제거래관리국) ① (생  
략)

②국장은 제28조제2항제10호 및  
제11호와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 
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  
한다.

제38조(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  
원) ①·② (생략)

③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  
하여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  
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(4  
급 또는 5급 1인)과 그 밖의 정원

1. -----부과·  
감면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업무

2. ~ 11.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조사2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 
-----제1호 내  
지 제4호와 제31조제2항제1호·제  
2호·제5호 및 제12호-----  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조사3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 
-----  
-----제32조제2항  
제5호 내지 제9호-----.

제33조의3(국제거래조사국) ① (현  
행과 같음)

②국장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38조(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  
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

## 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국세청공무원정원표(제38조제1항관련)

| 직 급 별    | 현 행        | 개 정        | 증 감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총 계      | <u>753</u> | <u>759</u> | + 6 |
| ·        | ·          | ·          |     |
| ·        | ·          | ·          |     |
| 일반직 계    | <u>665</u> | <u>671</u> | + 6 |
| ·        | ·          | ·          |     |
| ·        | ·          | ·          |     |
| 4급       | <u>22</u>  | <u>23</u>  | + 1 |
| ·        | ·          | ·          |     |
| 4급 또는 5급 | <u>30</u>  | <u>29</u>  | - 1 |
| ·        | ·          | ·          |     |
| ·        | ·          | ·          |     |
| 6급       | <u>224</u> | <u>229</u> | + 5 |
| ·        | ·          | ·          |     |
| 7급       | <u>166</u> | <u>167</u> | + 1 |
| ·        | ·          | ·          |     |
| ·        | ·          | ·          |     |

[별표 3]

국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(제39조제1항관련)

| 직 급 별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| 증 감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총 계             | <u>16,478</u>      | <u>16,472</u> | -6  |
| 일반직 계           | <u>14,886</u>      | <u>14,880</u> | -6  |
| ·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    |
| ·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    |
| 4급              | <u>160</u>         | <u>159</u>    | -1  |
| 4급 또는 5급        | <u>65</u>          | <u>66</u>     | +1  |
| 5급              | <u>718</u>         | <u>730</u>    | +12 |
| 6급              | <u>3,544</u>       | <u>3,527</u>  | -17 |
| ·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    |
| 7급              | <u>3,558</u>       | <u>3,557</u>  | -1  |
| ·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    |
| ·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    |
| 9급              | <u>2,724</u>       | <u>2,721</u>  | -3  |
| 9급 또는 별정직(9급상당) | 8                  | 8             |     |
| <u>연구사</u>      | <u>&lt;신 설&gt;</u> | <u>3</u>      | +3  |
| ·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    |
| ·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    |